

##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통지 공고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17조(안전장비의 착용)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서(이의신청통지)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기 간 : 2019. 3. 9.(토) ~ 3. 24.(일) / 16일간
2. 대 상 자 : 이종성
3. 공 고 내 용 : 불임(과태료처분 통지서)

공고일 : 2019. 3. 9.

태안해양경찰서



제2019-002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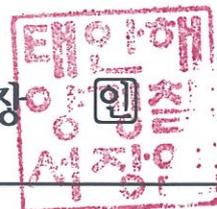
# 과태료처분 통지서

성명	이종성		
주민등록번호	631005-1*****		
위반사항	위반법조항	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2호	
	위반내용	인명안전장비 미착용	산출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0조
과태료 금액	금100,000원(금일십만원)		

1. 이 과태료 납입고지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입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2. 또한,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재판을 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) 제1항,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, 기타 과태료 체납 시 제재사항은 붙임 과태료 부과 고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수상레저계 041-950-2551)로 문의 바랍니다.

2019년 3월 9일

태안 해양경찰서장



## 과태료 부과 고지 사항

### ◆ 관련규정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

### ◆ 고지사항

#### 1. 관허사업의 제한

제52조(관허사업의 제한) ① 행정청은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및 갱신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.

1.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,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

#### 2. 신용정보 제공

제53조(신용정보의 제공 등)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2를 준용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#### 3.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(監置)

제54조(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)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

1.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,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,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
2.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

#### 4.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

제55조(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 ① 행정청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·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(이하 "자동차 관련 과태료"라 한다)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.